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 (단위: 만원)

[illegible]

의 경우: 1								
6)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의 경 우: 1								
7) 플랫폼운송 사업의 경우 : 2								
나. 5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 유한 여객자 동차운송사업 자가 해당 교 통사고일 이 전 최근 1년 간 다음의 구 분에 따른 교 통사고를 일 으킨 경우								
1) 1건의 교통 사고	60	60	60	60	60	60	60	
2) 2건의 교통 사고	120	120	120	120	120	120	120	
다. 1건의 교통 사고로 발생 한 사망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 우 (시 외 버스 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 송사업의 경 우에는 비교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8명 이상 9 명 이하	1,600		800	800	1,600	1,200	800	
2) 5명 이상 7 명 이하	1,200		400	400	1,200	800	400	

[illegible]

록한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을 한 경우	3차 이상	540	540	540	540	540	540	540	540	540
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 또는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1차	180	180							
	2차	360	360							
	3차 이상	540	540							
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	1차			40	40			40		
	2차			80	80			80		
	3차 이상			160	160			160		
라.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면허 또는 허가를 면허를 받은 업무범위 또는 면허기간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1차	180	180	180	180			180		180
	2차	360	360	360	360			360		360
	3차 이상	540	540	540	540			540		540
마. 면허·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다	1차	10	10	10	10	20	20	10	20	10
	2차	15	15	15	15	30	30	15	30	15

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 2)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차고지와 인접한 자기 소유의 주차장에 밤샘주차한 경우
- 3)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영업중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에 밤샘주차한 경우
- 4)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대여중에 밤샘주차한

경우											
5) 일반택시운 송사업에 사 용되는 자동 차를 「주차 장법」 제2조 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 차장에 밤샘 주차한 경우											
바. 법 제4조 및 이 영 제3조 제2호라목을 위반하여 신 고를 하지 않 거나 거짓으 로 신고를 하 고 개인택시 를 대리운전 하게 한 경우		1차 2차				120 240					
4. 법 제5조, 제 29조, 제49조의 3 또는 제49조 의18에 따른 여 객자동차운송사 업, 자동차대여 사업, 플랫폼운 송사업 또는 플 랫폼중개사업의 면허기준, 등록 기준 또는 허가 기준 중 운수 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 시설에 관한 기 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 내에 그 기준을	법 제85 조제1항 제7호	1차 2차 3차 이상	90 180 270	90 180 270	90 180 270	90 180 270	90 180 270	90 180 270		90 180 270	

[illegible]

약관·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운송약관, 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100	100	100	50	100	100	100	100	100	
	2차	150	150	150	75	150	150	150	150	150	
나. 신고한 운송약관, 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60	60	60	30	60	60	60	60	60	
	2차	120	120	120	60	120	120	120	120	120	
	3차 이상	180	180	180	90	180	180	180	180	180	
7. 법 제10조(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의3 제6항을 위반하여 인가·등록·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12호
가. 임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사업계획을 위반한 경우	1차	100	100					100			
1) 미운행	2차	150	150					150			

[illegible]

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운행시간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미리 운행하거나 임의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20	20							
		2차	40	40							
바. 운행지역별 주 배차대수, 서비스 특화 계획 등 사업계획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플랫폼 운송사업만 해당한다)		1차								100	
		2차								150	
사. 그 밖에 사업계획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1차	10	10	10	10	10	10	10	10	10
		2차	15	15	15	15	15	15	15	15	15
8.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법 제85조제1항 제14호	1차	360	360	360		360	360	360		
		2차	720	720	720		720	720	720		
		3차 이상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0	0							

계 관리위탁한 경우										
9. 법 제14조(법 제35조 및 제 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 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 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동 차대여사업 및 플랫폼운송사업 을 양도·양수 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법 제85 조제1항 제15호									
가. 법 제14조제 1항(법 제35 조 및 제49조 의9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 고를 하지 않 고 여객자동 차 운 송 사 업 (개 인 택 시 운 송사업은 제 외한다), 자동 차 대 여 사 업 , 플랫폼운송사 업을 양도하 거나 양수한 경우		1차	360	360	360		360	360	360	360
		2차	720	720	720		720	720	720	720
		3차 이상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나. 법 제14조제 4항(법 제35 조 및 제49조 의9에서 준용		1차	360	360	360		360	360	360	360
		2차	720	720	720		720	720	720	720
		3차 이상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illegible]

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한 경우		1차		60								
		2차		120								
		3차 이상		180								
나. 법 제18조제3항에 다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180								
		2차		360								
		3차 이상		540								
12. 법 제21조제2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0호	1차	500	500	360	360	500	360	360		360	
		2차	1,000	1,000	720	720	1,000	720	720		720	
			0	0								
13. 법 제21조제8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4	1차			180	180					180	
		2차			360	360					360	
		3차 이상			540	540					540	
14. 삭제<2026. 5. 6>												
15.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법	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6	1차	360	360			360					
		2차	720	720			720					

제 21 조 제 11 항 에 따른 운수종 사자의 휴식시 간 보장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16. 운송사업자 (자동차 1대를 운 송 사 업 자 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 업자는 제외한 다) 및 플랫폼 운 송 사 업 자 가 법 제 21 조 제 12 항 전단(법 제 49 조 의 9 에 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 지 않은 경우	법 제 85 조 제 1 항 제 20 호의 7	1차 2차 3차 이상	360 720 1,080 0	360 720 1,080 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17. 운송사업자 (자동차 1대를 운 송 사 업 자 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 업자는 제외한 다) 및 플랫폼 운 송 사 업 자 가 법 제 21 조 제 12 항 후단(법 제 49 조 의 9 에 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 85 조 제 1 항 제 20 호의 8	1차 2차 3차 이상	540 1,080 0 1,620 0	540 1,080 1,620	540 1,080 1,620	540 1,080 1,620	540 1,080 1,620	540 1,080 1,620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18. 법 제21조제13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택시운송사업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구 간운임제 시행지역은 제외한다)	법 제85조제1항 제21호	1차 2차 3차 이상		40 80 160	40 80 160					
나. 운임 또는 요금을 받고 승차권이 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경우와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자는 제외하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1차 2차	10 15		10 15	10 15	10 15	10 15	10 15	10 15

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여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40	40	40	40	40	40	40		40
라. 자동차 안에 게시해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20	20	20	20	20	20	20		20
	2차	40	40	40	40	40	40	40		40
마.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1차	20	20	20	20	20	20	20		20
	2차	40	40	40	40	40	40	40		40
바. 운송사업자가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해당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1차	60	60	60	60	60	60	60		60
	2차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3차 이상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사. 하차문이 있는 노선버스	1차	360	360					360		
	2차	720	720					720		

(시외직행, 시 외고속 및 시 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 압력감지기 또는 전자감 응장치, 가속 페달 잠금장 치를 설치하 지 않거나 작 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 행한 경우	3차 이상	1,080	1,080					1,080		
아. 차실에 냉방 · 난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 지 않고 여객 을 운송한 경 우	1차	60	60	60	60	60		60		60
	2차	120	120	120	120	120		120		120
	3차 이상	180	180	180	180	180		180		180
자. 차 안에 안 내방송장치 및 정차신호 용 버저를 작 동시킬 수 있 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하 는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 지 않은 경우	1차	100	100					100		
	2차	200	200					200		
차. 차내 안내방 송 실시 상태 가 불량한 경 우	1차	10	10					10		
	2차	15	15					15		
카. 버스의 앞바 퀴에 재생 타	1차	360	360			360	360	360		
	2차	720	720			720	720	720		

이어를 사용한 경우	3차 이상	1,080	1,080			1,080	1,080	1,080		
다. 앞바퀴에 튜브리스타이어를 사용해야 할 자동차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차		360			360				
	2차		720			720				
	3차 이상		1,080			1,080				
파. 원동기의 출력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120	120			120		120	24	
	2차	240	240			40		0		
	3차 이상	360	360			360		360		
하.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칸막이 벽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차	180						180		
	2차	360						360		
	3차 이상	540						540		
거. 그 밖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한 경우	1차	20	20	20	20	20	20	20		20
	2차	30	30	30	30	30	30	30		30
너.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10	10	10	10	10	10	10		10
	2차	15	15	15	15	15	15	15		15
더.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점검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60	60	60	60	60	60	60		60
	2차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3차 이상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러. 차량 정비, 운전자의 과	1차			20	20			20		20
	2차			40	40			40		40

로 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 운행 금지 등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1차			180					180
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에게 운송사업용자동차를 제공(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2차			360					360
버. 운송사업자가 차내에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	10	10	10	10	10	10	
서.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서 하여금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	1차		180			180			
	2차		360			360			
	3차 이상		540			540			

중인 전세버 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 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 고 좌석을 이 탈하여 돌아 다니는 승객 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 을 안내하도 록 지도·감 독하기를 게 을리한 경우									
처. 전세버스운 송 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 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 서 가요반주 기·스피커· 조명시설 등 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예 현저히 장애 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 행위를 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 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감독하 기를 게을리 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180 360 540			
커.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자가	1차 2차						180 360		

여객의 운행 요청을 거부 한 경우 터. 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 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 차운송사업자 는 제외한다) 및 플랫폼운 송사업자가 차량 운행 전 에 운수종사 자의 건강상 태,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 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운수종 사자가 질병 · 피로 또는 그 밖의 사유 로 안전한 운 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됨에도 해당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 을 운행하게 한 경우 또는 해당 운수종 사자를 대신 하여 대체 운 수종사자를 투입(노선 여 객자동차운송 사업자만 해 당한다) 하지 않은 경우	3차 이상						540		
	1차	180	180	180		180	180		180
	2차	360	360	360		360	360		360
	3차 이상	540	540	540		540	540		540

퍼. 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 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플랫폼운 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또는 대기실 에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수대 등 편 의시설을 설 치하지 않은 경우		1차	60	60	60		60		60		60
		2차	120	120	120		120		120		120
		3차 이상	180	180	180		180		180		180
19. 법 제23조, 제33조 또는 제 49조의7에 따 른 개선명령 또 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 조제1항 제22호	1차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2차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3차 이상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20. 법 제25조제 2항(법 제49조 의9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 은 경우	법 제85 조제1항 제23호	1차	30	30	30		30	30	30		30
		2차	60	60	60		60	60	60		60
		3차 이상	90	90	90		90	90	90		90
21. 법 제27조의 3제1항을 위반 하여 영상기록 장치를 설치하 지 않은 경우	법 제85 조제1항 제23호 의2	1차	60	60			60				
		2차	120	120			120				
		3차 이상	180	180			180				
22. 법 제27조의	법 제85	1차	60	60			60				

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 장치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조제1항 제23호 의3	2차 3차 이상	120 180	120 180			120 180					
23.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관리 위탁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 위탁하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25호	1차 2차 3차 이상								360 720 1080		
24.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26호	1차 2차 3차 이상								180 360 540		
24의2. 법 제3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26호 의2	1차 2차 3차 이상								360 720 1,080		
25.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32호 의2	1차 2차 3차 이상									180 360 540	
26. 법 제49조의6제4항 또는 제	법 제85조제	1차 2차			60 120	60 120					60 120	

[illegible]

해 또는 기피하 거나 질문에 응 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가.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1차	60	60	60	30	60	60	60	60	60	60
기피한 경우	2차	120	120	120	60	120	120	120	120	120	120
나. 질문에 응하 지 않거나 거 짓으로 진술 을 한 경우	3차 이상	180	180	180	90	180	180	180	180	180	180
32. 법 제84조에 따른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초 과하여 운행한 경우. 다만, 같 은 조 제3항에 따라 차령을 초 과하여 운행하 는 경우는 제외 한다.	법 제85 조제1항 제36호	1차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2차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3. 관할 관청이 면허·허가·인 가 등에 불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85 조제1항 제38호	1차	180	180	180	180		180			
		2차	360	360	360	360		360			
		3차 이상	540	540	540	540		540			

비고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위 표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위반행위란의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통사고건수의 산정은 경상사고인 경우에는 0.3건, 중상사고인 경우에는 0.7건,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1건으로 각각 계산한다.
3.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는 다음 표와 같다(위반행위란의 제2호다목 및 라목 관련).

(단위: 만원)

위 반 내 용	관 계 법 조 문	과 징 금 의 액 수			
		시 외 버 스 운 송 사 업 (운행형태별)			농어촌 버스운 송사업
		고 속	직 행	일 반	

가.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3호				
1) 8명 이상 9명 이하		3,600	2,400	1,200	1,200
2) 5명 이상 7명 이하		2,400	1,600	800	800
3) 2명 이상 4명 이하		1,200	800	400	400
나.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중상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3호				
1) 10명 이상 19명 이하		2,400	1,600	800	800
2) 6명 이상 9명 이하		1,200	800	400	400

4. 1건의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 이상 5명 이하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위반행위란의 제2호라목2)에 따라 처분한다.
5. 위반내용란의 제7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목의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별로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추가 위반횟수(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횟수는 제외한다) 1회당 위표의 처분기준 금액의 50%를 더하여 일괄 처분한다.
6. 고의·중과실로 위반내용란의 제12호, 제15호 및 제18호바목·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가중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2. 터미널사업

(단위: 만원)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위반 횟수	과징금의 액수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행정구역	인구 3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의 행정구역	인구 2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의 행정구역	인구 2만 명 미만의 행정구역
1.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터미널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15호	1차	200	150	100	50
가. 신고를 하지 않고 터미널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나.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인 터		1차	200	150	100	50

미널운송사업자를 합병한 경우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2.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터미널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16호					
가.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휴업한 경우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폐업한 경우		1차	300	200	150	70
		2차	600	400	300	140
		3차 이상	900	600	450	210
다.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1차	300	200	150	70
		2차	600	400	300	140
		3차 이상	900	600	450	210
3.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2호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않고 터미널 시설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7호					
가.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나. 공사시행 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한 경우		1차	300	200	150	70
		2차	600	400	300	140
		3차 이상	900	600	450	210
다. 공사시행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라.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5.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을 받지 않고 터미널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8호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터미널의 사용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9호	1차	300	200	150	70
		2차	600	400	300	140
		3차 이상	900	600	450	210
7.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터미널 사용약관을 시행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0호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터미널 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1호					
가. 터미널사용자 또는 터미널 이용객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거나 편리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나. 인가된 시설 사용료 외의 요금을 징수한 경우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다. 터미널의 시설기준 또는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터미널을 관리한 경우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라.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300	200	150	70
		2차	600	400	300	140
		3차 이상	900	600	450	210
9. 법 제43조에 따른 변경인가를	법 제					

받지 않고 터미널의 위치·규모 또는 구조·설비를 변경한 경우	85조제 1항제 32호					
가. 터미널의 위치 또는 규모를 인가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1차	300	200	150	70	
	2차	600	400	300	140	
	3차 이상	900	600	450	210	
나. 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를 인가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1차	300	200	150	70	
	2차	600	400	300	140	
	3차 이상	900	600	450	210	

비고: 행정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시·읍·면을 기준으로 한다.

3. 플랫폼가맹사업 (단위: 만원)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과징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9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제3호	240
2. 법 제4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제4호	100
3. 법 제49조의10제5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9조의15제1항제5호	120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제6호	120
5.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를 위반하여 플랫폼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제8호	100
6.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 또는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제10호	360
7. 법 제49조의17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의14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9조의15제1항제12호	50
8. 법 제49조의15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법 제49조의15제1항제13호	360

경우	호	
----	---	--